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을
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어가 직불제에서 제외되었던 사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양식업을 대상업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수산
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단, 한국수산
자원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의 수행에 한함)

별표 1 제1호가목5) 중 “양식업(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식업은 제외
한다)”을 “양식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 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 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u>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u>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u>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u> <u>「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u> <u>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u> <u>공단(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은</u> <u>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u> <u>의 수행에 한함)</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연 락 처	(044) 200 - 5452